

규제없는 야간노동, 무너지는 노동자 건강

장항미 아시아과로사감시팀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함께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자의 24시간 생체주기 리듬을 파괴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수면장애, 소화기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건강을 악화시킨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9년 야간노동을 인체 발암 추정 물질(2A군)로 정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3시간 이상 △주 3회 이상 △10년 이상 야간노동을 하면 위험성은 훨씬 가중된다.

유일한 보호책, 야간 특수건강진단

사회적 필요 때문에 야간노동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야간노동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의료 업무 등 필수적인 업종에만 야간노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1일 3시간, 1주 2회 이상 야간노동을 시키려면 노사 합의 혹은 노동 당국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핀란드에선 3개 이상의 주야 교대조가 있어야 야간노동이 가능하고, 2교대 시에는 새벽 1시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다. 영국은 야간노동시간이 1일 기준 8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부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노동자의 야간노동은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만 지급하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유일한 조치가 야간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다. 6개월간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혹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

는 경우 ‘야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 불면증 증상 문진, 혈압이나 공복혈당 등 뇌심혈관질환 위험 관련 검사, 위장관계나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등으로 이루어진다.

늘어만가는 야간작업자 유병률

지난 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8만 3,883명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이 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노동자는 233,022명으로 19.7%에 달한다. 야간 건강진단 받은 노동자 5명 중 1명이 질병 소견을 보인 것이다. 이 비율은 2018년 15%에서부터 2022년 20%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 역시 많이 증가했다.

일차적인 원인은 고령 노동자 증가로 보인다. 야간작업 특수검진을 받은 노동자 중 50세 이상 숫자가 32만 5천 명에서 38만 9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 야간노동자의 1/3이 50대 이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 유소견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56%가 넘는다. 점점 더 많은 고령 노동자가 야간노동을 한다는 것은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야간노동 직력이 장기화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밤일을 인생에 몇 년, 잠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10년 이상 해당 일을 하고 있다는 노동자가 2018년 24만 7천 명에서 2022년 28만 1천 명으로 3만 5천 명가량 증가했고, 전체 야간작업 노동자 중 비율도 22.7%에서 23.8%로 1%p 증가했다. 이렇게 장기간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서 유소견자 비율도 높아졌다. 2018년 유소견자 중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자의 비율이 27.8%였는데, 2022년에는 28.6%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10년 이상 야간작업한 노동자 중 유소견자 비율은 23.7%로 4명 중 1명은 질병이 있는 셈이다.

야간노동 규제가 필요하다

야간작업자에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야간노동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규제 없는 야간노동으로 장기간 야간노동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참고기사]

늘어나는 야간작업 유병률, 대책 없는 정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95>